

주소를 적지 않은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



재산분쟁을 막기 위해 미리 유언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유언장을 작성하고도 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언장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충족돼야 하는지 확인해 보자.

유언은 100세시대에 반드시 챙겨야 할 재테크 방법이다. 가족 간 재산분쟁이 발생하면 대개 몇 년에 걸친 소송을 거치게 된다. 이 경우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과도한 소송비용으로 인해 가정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가족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리 유언을 남겨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비용의 낭비를 없애는 것이다.

잘 사는 것(well-being)만큼이나 잘 죽는 것(well-dying)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유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언 대중화의 트렌드를 반영하듯 요즘 TV를 시청하다 보면 연예인들이 자신의 유언을 메모한 것이라며 자필로 적은 수첩을 보여주곤 한다. 또 스마트 폰

이나 컴퓨터에 자신의 유언을 적어 놓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유언을 작성할 때도 정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애써 작성한 유언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법으로 정한 요건이 충족돼야 인정받을 수 있어

유언의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자필유언, 녹음유언, 공증유언, 비밀유언, 구수유언 등 다섯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유언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자필유언이다. 자필유언은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실제로 자필유언이 정확하게 써져 있는지를 검토해 주고 보수를 받는 변호사도 많은 실정이므로, 자필유언 방법을 아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도움이 된다.

민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에 관해 민법 제 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 요건에 적합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되기 위해서는 ① 유언 내용을 자필로 작성해야 하고, ② 유언작성 연월일을 기재해야 하며, ③ 주소를 써야 하고, ④ 성명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즉, 도장 대신 서명을 한 자필유언은 효력이 없다. 또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동'까지만 주소를 기재하고 그 이후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자필유언

Summary

- ① 유언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가족분쟁과 소송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 ②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동'까지만 주소를 기재하고 그 이후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자필유언은 무효이다.
- ③ 자필유언의 장점은 돈이 들지 않고, 간편하다는 것이다.
- ④ 자필유언의 단점은 유언장의 위조, 변조, 분실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자필유언과 공증유언의 차이점		
	자필유언	공증유언
증인	필요 없음	2명의 증인 필요
비용	비용이 들지 않음	최대 300만원
장점	유언의 비밀 보장	유언장의 위조, 변조, 분실 위험 적음
단점	유언장의 위조, 변조, 분실 위험 있음	유언 내용이 증인에게 공개됨

의 효력이 부정된다. 컴퓨터로 타자를 친 유언, 복사된 유언장도 역시 무효이다.

한편, 유언자는 유언 당시 치매 등 정신적인 제약이 없어야 한다. 유언자가 유언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가 언제인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유언작성의 연, 월까지만 기재하고 일(日)을 기재하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만 드러나면 되므로, 가령 '칠순 잔칫날 유언장을 작성하다'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

또한 법으로 허용하는 사항 이외의 것을 유언장에 남기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리산에 묻어 달라'는 것은 유언자의 희망 사항이기는 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유언장 항목은 아니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장점은 돈이 들지 않고, 간편하다는 것이다. 또한 증인이 필요 없다는 것도 매력적인 장점이다. 공증증서의 경우 2인의 증인이 필요한데, 유언 내용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자필유언이 공증증서 유언보다 효과적이다. 반면 자필증서 유언의 단점은 유언장의 위조, 변조, 분실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언장에서 배제된 자녀들이 그 유언이 위조 및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자필증서 유언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하여 유언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손도장 찍는 것까지는 적절한 유언방식의 판례로 인정해 주고 있다. ㅎ



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bhs0319@hanafn.com

▶ 학력·자격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변호사

▶ 저서
알고 싶은 부자들의 세금·법률 상담 사례집

▶ 경력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조정위원
서울시, 재향군인회 등 자문
KBS, SBS스페셜(상속), YTN 등 출연
조선일보, 동아일보 상속증여 칼럼 다수 기고
(現)한국 가족법 학회 정회원